

## 2023년도 「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」 주관기관(대기업 등) 모집

중소기업 제조 현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중소기업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23년도 스마트공장 보급·확산사업의 대중소상생형 스마트공장 주관기관 모집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3년 1월 27일  
중소벤처기업부 장관

◆ 본 공고는 대중소상생협력을 위하여 정부와 함께 중소기업을 지원할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을 모집하는 공고이며, 중소·중견 기업 모집은 주관기관 선정 후 주관기관 또는 협업기관에서 별도로 공지할 예정입니다.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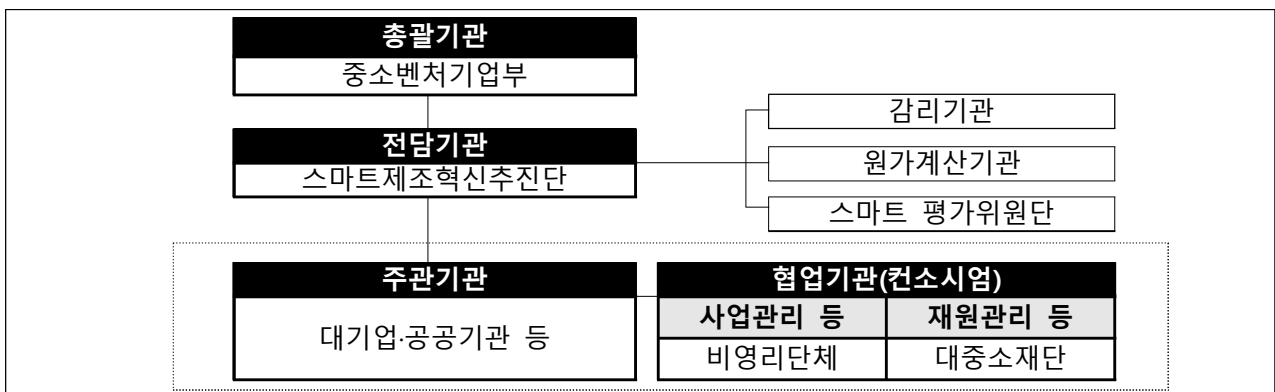
### 1. 사업개요

#### □ 사업목적

- 민간이 주도하고 정부가 함께하는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을 통해 대·중소기업 동반성장과 민간의 자발적인 보급확산 생태계 구축

□ 지원규모 : 총 216억원 (기초 60억원 / 고도화1 156억원)

#### □ 추진체계 및 역할



- (전담기관) 주관기관 모집·선정, 사업관리 및 운영, 구축지원, 사업완료 점검, 예산 집행 등의 업무수행
- (주관기관) 지원금 출연, 사업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전문 인력 지원, 추진점검, 사업비 집행 관리, 현물출자(인건비) 등의 업무수행

- (협업기관) 정부-주관기관 지원금 위탁운영, 중소·중견기업 추천·선정, 사업비 집행, 구축관리 등의 업무수행
- (재원관리) 주관기관 발굴, 정부지원금·주관기관출연금 관리(사업비 교부, 회계정산, 반납) 등의 업무수행 (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)

## 2. 신청자격 및 지원내용

### □ 신청자격

- (주관기관) 대기업·중견기업·공공기관·민간기관
  - 중소/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공장 보급확산 역량 보유(협업기관과 컨소시엄 가능)
- (협업기관) 공공·민간기관(비영리단체)
  - 정부지원금 위탁운영에 결격사유가 없고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역량 보유
  - \* 컨소시엄 참여 가능

### □ 지원내용

- (구축비용 지원) 주관기관(대기업 등)이 중소·중견기업과 협력하여 스마트 공장을 구축할 경우, 정부가 구축비용의 일부를 지원

구 분	지원조건	정부	주관기관	중소·중견기업
총 구축비용	유형 1	30%	70%	
			30% 이상	40% 이내
	유형 2(소기업 대상)	50%	50%	-

< 정부지원금 >

- 유형 1 : (기초) 최대 3천만원 (고도화1) 최대 1억 2천만원
- 유형 2 : (기초) 최대 1천만원 (기업부담금 없이 정부·대기업이 각각 50% 부담)

- (운영비 지원) 주관기관이 타 기관(협업기관)과 컨소시엄을 이루어 참여하면, 협업기관에 한해 중소·중견기업 모집·선정 등에 필요한 운영비 지원
- \* 매칭된 정부지원금의 5% 이내 협업기관 운영비로 책정 가능

□ 사업기간 : 최대 12개월(협약기간 협의 가능)

### 3. 신청기간 및 방법

#### □ 신청기간 및 방법

- (신청기간) 2023년 2월 1일(수) ~ 2023년 6월 30일(금) 17시까지 신청 마감
  - \* 정부지원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음(마감시 별도 공지 예정)
- (신청방법)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(smart-factory.kr) 온라인 접수
  - 사이트 접속 → 회원가입(기업) → 과제신청 메뉴 → 제출서류 다운로드 및 작성 → 온라인 신청(제출서류 업로드, 도입기업 아이디로 신청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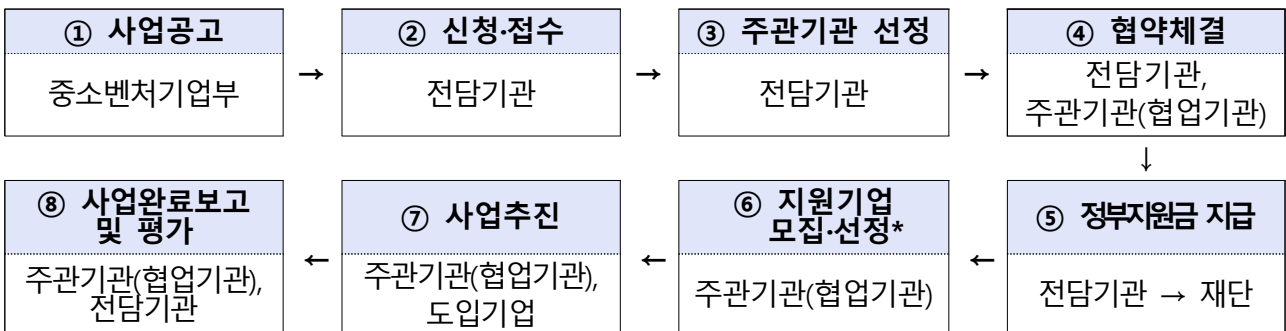
#### ○ 제출서류

구분	온라인 등록 서류
1	대·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구축지원 주관기관 신청서
2	상생협력 구축지원 전략(안) 1부
3	도입기업 모집 공고문(안) 1부
4	주관기관 및 협업기관 사업자등록증명원 각 1부

\* 관련양식은 <https://smart-factory.kr> 에서 다운로드 가능

### 4. 지원절차 및 선정방법

#### □ 지원절차



\* ⑥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은 별도 공고

## □ 선정절차 및 방법

- 주관기관의 요건을 사전검토한 후, 평가위원회에서 평가지표에 따라 사업계획서의 적정성 등에 대한 서면 평가

평가 항목		배점
사업전략의 적정성 (30)	- 사업목표의 적절성	10
	- 추진체계의 적정성	15
	- 컨소시엄 구성 적절성	5
기대효과 (20)	- 기대성과 및 파급효과와 보급·확산 가능성	10
	- 경제성 및 시장에 미치는 효과	10
주관기관 역량 (50)	- 주관기관의 투자의지, 추진의지	50
합 계		100

\* 정부정책 방향성 등을 고려하여 기초 및 고도화 지원금 조정 가능

## □ 기타사항

- 주관기관은 정부지원금 및 주관기관 출연금 매칭 외에 현물출자 인정 (최대 20%)에 대한 추가 정부지원금을 반영한 사업비 구성 가능

구분	직접사업비 구성(예시)		
	주관기관 출연금	정부지원금	합계
비율	30%	30%	60%
현금	100억원	120억원	220억원
(현물-인건비)	(20억원)	-	(20억원)
총계	120억원*	120억원	<b>240억원</b>

\* 기존 참여 주관기관은 최근 3년 평균 현금 출자액 이상 출자할 경우 최대 20% 인정

\*\* 주관기관은 사업완료 후 전담기관에 현물출자에 대한 증빙자료 제출(현물출자 약속서 등 인건비 증빙 가능한 자료)

- 주관기관 및 협업기관은 ‘상생형 협의회’에 참여 권장

\* (상생형 협의회) 대중소상생형 사업진행 관련 애로사항, 제도개선 등 건의사항 제안하는 민간 자율협의회로 연 2회 개최 예정

- 선정시 각 사업별 관리지침 및 세부관리기준 상 절차 및 의무를 준수 하여 협약체결 및 과제를 수행하여야 함. 단, 사업운영상 필요시 전담 기관 및 주관기관 협의를 통해 별도 운영 가능

\* 지침 및 세부관리기준은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개정사항 등 상시 게시

## □ 도입기업 모집 관련사항

- 유형2 지원조건외의 경우 집중A/S기간(6개월) 및 기술임치 의무대상에서 제외 (선택사항)
- 목표수준을 초과 달성했던 기업의 경우\* 1회에 한해 목표수준에 맞는 정부지원금(최대 1.2억원) 지원

\* 기초사업 완료 후 구축시스템 스마트화수준이 중간1이상으로 측정된 기업

- 사업에 선정된 참여기업(도입·공급기업)은 ① 사업관리교육, ② 스마트공장 관련 교육 의무 수료

구분	세부내용
①사업관리교육 (온라인)	- 대상 : 도입기업, 공급기업 - 내용 : 사업지침, 부실·부실행위 제재 사례, RCMS 사용법 등 * 협약 후 30일 이내 수료완료, 별도 이수증 제출없이 시스템에서 확인 - 교육기관 : 스마트제조혁신협회
②스마트공장 관련 교육	- 대상 : 도입기업 - 내용 : ①CEO·임원 대상 리더십 과정과 ②재직자 대상 교육과정을 모두 의무 수료하고, 사업 완료보고서 제출 시 이수증 첨부 - 교육기관 : 중진공 연수원 등 * 단, '스마트마이스터 활용지원' 참여시 의무교육 대상에서 제외 ** 관련 교육과정 참고사항 : [붙임2 확인]

- 스마트공장 사업에 참여한 도입기업의 구축\* 및 사후관리(시스템 안정화, AS 관리 등) 인력 인건비를 기업 부담금 20% 이내(동일수준 최대 8백만원, 고도화1 최대 32백만원)에서 사업비에 포함 가능

\* 공정 프로세스 분석, 맞춤형 솔루션 설계 등

\*\* 인건비 지급 증빙자료(입금확인증 등) 및 수행일지 등 확인 예정

- 컨소시엄 구성없이 도입기업의 자체 기술인력으로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기업의 경우 필요시 사업종료 후 정산절차 진행 예정
- 스마트공장 활용현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도입기업에 구축된 솔루션의 로그정보를 스마트공장 사업관리시스템에 제출 필수
- 신축 예정 공장의 경우 지원 가능
  - 단, 공장설립(계획) 승인서 및 신축공장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사업기간 내 추진 가능성 등을 정밀 검토

## 5. 문의처

### □ 사업 총괄안내

구분	담당기관	문의사항	전화
사업총괄	중소벤처기업부 (제조혁신정책과)	시행계획 수립·총괄	1357
전담기관	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부설 스마트제조혁신추진단 (보급확산실)	사업관련 문의	044-300-0958

### □ 협업기관 안내처

구분	기관명	문의사항	연락처
협업기관	대·중소기업·농어업협력재단 혁신성장지원부	주관기관 모집 및 대중소협력기금 출연 관련	02-368-8941, 02-368-8745
	대한상공회의소 스마트제조혁신팀	'22년 참여 협업기관	02-6050-3852
	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 품질기술지원팀		02-3271-2988 02-3271-2957
	중소기업중앙회 스마트산업부		02-2124-3392, 02-2124-4313
	한국생산성본부 스마트제조건설팅센터		02-724-1190
	한국표준협회 스마트혁신센터		02-6240-4873

\* 주관기관/협업기관 선정 후 도입기업 모집공고 실시 예정이므로, 도입기업 신청 접수 관련 문의는 주관기관 별 도입기업 모집공고 확인 후 해당 협업기관에 문의

# 붙임 1

## 소기업 규모 기준

\*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①항 별표3

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	분류기호	규모 기준
1. 식료품 제조업	C10	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
2. 음료 제조업	C11	
3. 의복, 의복액세서리 및 모피제품 제조업	C14	
4. 가죽, 가방 및 신발 제조업	C15	
5. 코크스, 연탄 및 석유정제품 제조업	C19	
6. 화학물질 및 화학제품 제조업(의약품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0	
7. 의료용 물질 및 의약품 제조업	C21	
8. 비금속 광물제품 제조업	C23	
9. 1차 금속 제조업	C24	
10. 금속가공제품 제조업(기계 및 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25	
11. 전자부품, 컴퓨터, 영상, 음향 및 통신장비 제조업	C26	
12. 전기장비 제조업	C28	
13. 그 밖의 기계 및 장비 제조업	C29	
14. 자동차 및 트레일러 제조업	C30	
15. 가구 제조업	C32	
16. 전기, 가스, 증기 및 공기조절 공급업	D	
17. 수도업	E36	
18. 농업,임업 및 어업	A	평균매출액등 80억원 이하
19. 광업	B	
20. 담배 제조업	C12	
21. 섬유제품 제조업(의복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3	
22. 목재 및 나무제품 제조업(가구 제조업은 제외한다)	C16	
23. 펄프, 종이 및 종이제품 제조업	C17	
24. 인쇄 및 기록매체 복제업	C18	
25. 고무제품, 및 플라스틱제품 제조업	C22	
26. 의료, 정밀, 광학기기 및 시계 제조업	C27	
27. 그 밖의 운송장비 제조업	C31	
28. 그 밖의 제품 제조업	C33	
29. 건설업	F	
30. 운수 및 창고업	H	
31. 금융 및 보험업	K	평균매출액등 50억원 이하
32. 도매 및 소매업	G	
33. 정보통신업	J	평균매출액등 30억원 이하
34. 수도, 하수 및 폐기물 처리, 원료재생업(수도업은 제외한다)	E (E36 제외)	
35. 부동산업	L	
36. 전문·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	M	
37. 사업시설관리, 사업지원 및 임대 서비스업	N	
38. 예술, 스포츠 및 여가 관련 서비스업	R	
39. 산업용 기계 및 장비 수리업	C34	평균매출액등 10억원 이하
40. 숙박 및 음식점업	I	
41. 교육 서비스업	P	
42. 보건업 및 사회복지 서비스업	Q	
43. 수리(修理) 및 기타 개인 서비스업	S	

### 비고

- 해당 기업의 주된 업종의 분류 및 분류기호는 「통계법」 제22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한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다.
- 위 표 제27호에도 불구하고 철도 차량 부품 및 관련 장치물 제조업(C31202) 중 철도 차량용 의자 제조업, 항공 기용 부품 제조업(C31322) 중 항공기용 의자 제조업의 규모 기준은 평균매출액등 120억원 이하로 한다.

- (교육기관) 중소벤처기업연수원 (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운영)
- (교육장소) 집합교육은 전국 5개 연수원, 온라인 교육은 연수원 홈페이지 활용
- (교육기간) 연중 운영(1~12월)
- (교육방식) 온라인 또는 집합과정
- (교육비용) 무료 또는 유료
- (신청방법) 연수원 홈페이지(<http://sbti.kosmes.or.kr>)를 통해 신청

※ 세부 교육내용 및 일정은 홈페이지 참고

【 중소기업 연수원 문의 및 연락처 】

운영과정 구분	연수원명	전화번호
집합교육 웨비나(Webinar) 장기심화과정	중소벤처기업연수원 (경기도 안산)	031-490-1472
	호남연수원 (광주)	062-250-3000
	대구경북연수원 (경북 경산)	053-819-5001
	부산경남연수원 (경남 창원)	055-548-8045
	충청연수원 (충남 천안)	041-559-9225
온라인 교육	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기업인력연수처 에듀테크팀	031-490-1288